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
2.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작성 및 변경시
승인 관련 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특허청	작 성 자	이름	황인선
	담당부서 (과)	산업재산정보정책 과		직급	과학기술서기관
	국장	이인수		연락처	042-481-5084
	과장	최일승		이 메 일	ishwang@korea.kr

2024. 04. 16.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		
	2.규제조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3.위임법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4.19~2024.05.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의 규정 필요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라 함) 제12조제5항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업재산정보법」의 근간인 '산업재산정보'는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심사·등록 관련 서류에서 발생하는 바, 접수 서류의 중요성 고 － 산업재산문서의 정확도 및 정비·가공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면접수서류의 정확한 전자화, 전자접수문서의 검수 및 再전자화가 필수 ※ 서면접수서류에서 직접적인 데이터 추출은 곤란하므로 전자화하고, 전자접수문서의 경우 오류 및 서식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검수(再전자화)를 통해 정확도 향상 도모 ○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고도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료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품질 향상 및 전자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문서 전자화 기관의 지정요건 규정 제정 필요 <정부개입 필요성> ○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품질의 산업재산정보 확보 및 업무 효율화 도모		

7.규제내용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규칙(안)」 제4조제1항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시설 요건 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 것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 것 2. 인력 요건 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없을 것 1)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2)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한국특허정보원 內 특허문서전자화센터 ○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지정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內 특허문서전자화센터</td><td>1개 기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지정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內 특허문서전자화센터	1개 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지정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內 특허문서전자화센터	1개 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의 지정요건을 바탕으로 전자화문서의 품질 향상 및 전자화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고도화와 산업재산정보의 활용 촉진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2,311.96	2,311.96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미해당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2,311.96	2,311.96	0	
15.규제 정비 계획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임·직원중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4. <삭 제>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시설 요건 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는 것 2. 인력 요건 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없을 것 1)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2)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의 규정 필요
 - * 「산업재산정보법」 제12조제5항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업재산정보법」의 근간인 '산업재산정보'는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심사·등록 등 관련 서류에서 발생하는 바, 접수 서류의 중요성 高
 - 산업재산문서의 정확도 및 정비·가공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면접수서류의 정확한 전자화, 전자접수문서의 검수 및 再전자화 필수
 - * 서면접수서류에서 직접적인 데이터 추출은 곤란하므로 전자화하고, 전자접수문서의 경우 오류 및 서식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검수(再전자화)를 통해 정확도 향상 도모
-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고도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료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품질 향상 및 전자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 규정 제정 필요

<정부개입 필요성>

-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품질의 산업재산정보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제고와 산업재산정보의 활용을 촉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으로 지정
	내용	○(인력) 전문성을 갖춘 인력 ○(시설) 문서 전자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 및 장비
규제대안2	대안명	별도 기준 없이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 지정
	내용	특별한 기준 없이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 지정을 원하는 유사경력 기관을 지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전산장비에 대한 최소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 산업재산정보의 품질 제고 및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업무의 효율성 향상 가능 - 또한, 신속·정확한 문서 전자화를 통해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고도화 가능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 지정을 위해 인력, 시설, 전산장비 등 요건을 충족 필요 - 업계 현실 및 매우 낮은 수준의 시설·장비요건 규정을 고려할 때,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추가 행정·재정적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인력) 문서 전자화 업무의 수행을 위한 최소 경력 요건으로, 현장에서 이미 통용되는 기준 ○ (시설·장비) 진단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전산장비 요건은 필수 * 미공개 특허정보 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시설 필수
규제대안2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부담 無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확보가 기관 자율에 맡겨지게 되므로, - 전자화 문서에 대한 일관된 품질 관리 및 업무 효율성 확보가 어려워 정책목표 달성 곤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은 문서전자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산업재산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통한 ①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고도화, ②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의 목적으로 도입
-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의 품질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품질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지정 요건 마련 필요
- 本 지정기준은 現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 수준과 동일하므로, 추가적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3. 규제목표

- 일정 기준의 이상 기관을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으로 지정·육성하여 고품질의 산업재산정보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제고와 산업재산정보의 활용 촉진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품질의 산업재산정보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제고와 산업재산정보의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수단)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이 수행할 서면접수문서의 전자화 및 전자접수문서의 再전자화 등의 품질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업무 전문성 및 시설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 지정요건을 마련
- (인력 요건의 타당성)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문서들에 대한 전자화 업무는 전문 수행 인력이 해당 권리들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전자화를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활용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서,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함
 - 現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內 특허문서전자화 센터가 既 고용 중인 전문인력 기준 또한 본 기준요건과 동일
- (시설·장비 요건의 타당성) 시설기준은 미공개 특허 문서 등의 비밀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시설의 최소 기준을 미설정, 비밀 유지 가능 전용 공간이면 요건을 충족
 - 전산장비는 일반적인 문서전자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現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內 특허문서전자화센터가 既 구비·활용 중인 바, 추가 부담 無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은 기관 지정의 규모에 제한이 없는 바, 일정 기준 만족 시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므로 사업자간 차별성은 없어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本 지정요건은 최소한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요건만을 규정한 바,
중소기업에 특별히 부담을 지우는 규제는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미설정)**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관리하여 **지속적인 품질 확보가 필요**하므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지정기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개별법 및 행정규칙에서 제도의 목적에 따라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요건을 다수 규정하고 있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④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드론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온라인 교육시설을 포함한 다)을 갖추 것
3.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과 관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추 것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으로 지정>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별표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지정요건
1. 사업 장 규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하며,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도를 모두 포함한다) 내의 농산물 직거래 수요에 적합한 매장규모를 갖출 것
2. 시설	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판매시설 나. 소포장시설 다. 품질관리실 라. 하역시설 마. 주차시설
3. 인력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2년 이상 관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비고 : 제1호의 사업장 규모는 농산물 직거래 수요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적합한 매장규모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으로 지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311.96	2,311.9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311.96	2,311.96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現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內 특허문서전자화센터에 既 적용되고 있는 요건이며, 또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고정 매출이 보장되므로 규제준수 가능성은 매우 高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특허청에서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기관으로 지정하므로, 추가적인 집행자원 없이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특허청의 사업담당자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집행이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시행규칙 제정안 작성('24.3.13, 특허청)
- 廳 內 의견수렴 실시('24.3.14 ~ 3.20)
- 시행규칙 제정안 확정('24.3.21)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규칙 제정 이후 주기적으로 現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특허 문서전자화센터)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 검토 및 환류 시행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해당사항 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전문성 및 적합 시설을 갖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을 지정 및 육성함으로써 **고품질의 산업재산정보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제고와 산업재산정보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本 지정기준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으로 지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311.96	2,311.9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311.96	2,311.96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으로 지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지정 기관						
활동제목	인력 유지 비용						
비용항목	노동						
비용	2,311,961,742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투입인원(33명) X 평균 월봉(5,949,495원) X 투입 월수(12개월) X 피규제자 수(1개 기관)(33*5,949,495*12*1)						
근거설명	<인건비 산출> ○ 연간 고용인원 33명의 등급별 인건비는 아래 표와 같음						
	기술등급	인원	노임단가	직접인건비	제경비	부가세	합계
	IT PM(Lv.5)	1	7,634,607	91,615,284	23,074,348	11,468,963	126,158,595
	IT테스터(Lv.6)	9	4,304,555	464,891,940	117,088,304	58,198,024	640,178,268
	IT테스터(Lv.5)	15	3,443,644	619,855,920	156,117,739	77,597,366	853,571,025
	정보시스템운용자(Lv.6)	1	6,729,052	80,748,624	20,337,456	10,108,608	111,194,688
	응용SW개발자(Lv.6)	1	6,426,417	77,117,004	19,422,791	9,653,980	106,193,775
	응용SW개발자(Lv.5)	2	5,141,134	123,387,206	31,076,466	15,446,367	169,910,040
	IT품질관리자(Lv.5)	2	6,635,277	159,246,648	40,108,073	19,935,472	219,290,193
	IT지원기술자	2	3,918,511	94,044,264	23,686,114	11,773,038	129,503,416
합계		33		1,710,906,890	430,911,291	214,181,818	2,356,000,000
○ 1인당 인건비는 5,949,495원/월 이므로 인력 조건							

	유지를 위한 인건비는 연간 총 23.6억원 수준 - 33명 x 5,949,495원/월 x 12개월 x 1개 기관 = 23.6억 원
--	--

☐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지정 기관
활동제 목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 위탁 사업비
편익항목	위탁사업비
편익	2,311,961,722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위탁사업비 X 피규제자수(2,416,000,000*1)
근거설명	< 위탁사업비 > 특허청에서 매년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를 위탁하는 비용으로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의 직접 수입에 해당 총 예산 : 연간 총 2,416,000,000원(부가세 포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작성 및 변경시 승인 관련 의무		
	2.규제조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		
	3.위임법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4.19~2024.05.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 항의 규정 필요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라 함) 제12조제5항 : 특허청장은 산업재 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업재산정보법」의 근간인 '산업재산정보'는 출원인이 제출 한 출원·심사·등록 관련 서류에서 발생하는 바, 접수 서류의 중요 성 高 － 산업재산문서의 정확도 및 정비·가공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면접수서류의 정확한 전자화, 전자접수문서의 검수 및 재 전자화가 필수 ※ 서면접수서류에서 직접적인 데이터 추출은 곤란하므로 전자 화하고, 전자접수문서의 경우 오류 및 서식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검수를 통해 정확도 향상 도모 ○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고도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료인 산업재산문서의 전 자화 품질 향상 및 전자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문서 전자화 기 관의 업무의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 제정·변경 시 특허청장에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정부개입 필요성> ○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의 업무 추진 시 주요사항에 대한 규정을 특허청장이 관리하여 고품질의 산업재산정보 확보 및 업		

		무 효율화 도모								
	7.규제내용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 규정)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지정 기관 - 現 특허정보원 內 특허문서전자화센터</td><td>1개 기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지정 기관 - 現 특허정보원 內 특허문서전자화센터	1개 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지정 기관 - 現 특허정보원 內 특허문서전자화센터	1개 기관								
	9.규제목표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의 업무 추진 시 주요사항에 대한 규정을 특허청장이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산업재산정보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여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고도화와 산업재산정보의 활용 촉진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4(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 규정)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은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 제>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 규정)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의 규정 필요**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라 함) 제12조제5항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업재산정보법」의 근간인 '**산업재산정보**'는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심사·등록 관련 서류에서 발생되는 바**, 접수 서류의 중요성 高
 - 산업재산문서의 정확도 및 정비·가공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면접수서류의 정확한 전자화, 전자접수문서의 검수 및 再전자화**가 필수
- * 서면접수서류에서 직접적인 데이터 추출은 곤란하므로 전자화하고, 전자접수문서의 경우 오류 및 서식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검수(再전자화)를 통해 정확도 향상 도모
-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고도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료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품질 향상 및 전자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전자화 기관 업무의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 제정·변경 시 특허청장에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정부개입 필요성>

-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의 **업무 추진 시 주요사항에 대한 규정을 특허청장이 관리하여 고품질의 산업재산정보 확보 및 업무 효율화 도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 업무 규정을 특허청장이 관리
	내용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의 업무 추진 시 주요사항에 대한 규정을 특허청장 승인 하에 제정·변경
규제대안2	대안명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 업무 규정을 자체 관리
	내용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의 업무 규정을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체 제정·변경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업무 수행 시 주요 사항에 대한 특허청장의 관리가 가능하여, - 산업재산정보의 품질 제고 및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업무의 효율성 향상 가능 - 또한, 신속·정확한 문서 전자화를 통해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고도화 가능	○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 업무 규정의 제·개정 시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 추가에 따른 피규제자 부담 증가
규제대안2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 업무 규정의 제·개정 자유도 증가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 업무 규정의 제·개정이 기관 자율에 맡겨지게 되므로, - 전자화 문서에 대한 일관된 품질 관리 및 업무 효율성 확보가 어려워 정책목표 달성 곤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	--------------	------	------

3. 규제목표

-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고도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료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품질 향상 및 전자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문서 전자화 기관의 업무의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 제정·변경 시 특허청장에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의 업무 추진 시 **주요사항에 대한 규정을 특허청장이 관리하여 고품질의 산업재산정보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제고와 산업재산정보의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수단) 문서 전자화 기관의 **업무의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 제정·변경** 시 특허청장에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 (수단의 타당성) 本 사항은 특허청의 **고유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의 추진에 대한 聽의 관리·감독은 필수**
 - 또한, 現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內 특허문서 전자화센터는 해당 업무를 특허청과 상시 소통하며 추진하고 있는 바, 업무 규정의 제·개정 시 특허청장의 **승인 절차의 추가는 그 규제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본 규제는 위탁기관 업무 규정의 제·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경쟁 관련 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본 규제는 위탁기관 업무 규정의 제·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영향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 수행 시 주요사항에 대한 규정을 특허청장이 관리하여 해당 업무의 지속적인 품질 확보가 필요하므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지정기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 개별법 및 행정규칙에서 제도의 목적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업무 규정 제·개정 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 규제조항 존재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 >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12. 22.>

8.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7조(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폐지의 승인)전자등록기관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전자등록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現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內 특허문서전자화센터에 既 적용되고 있는 요건이며, 또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고정 매출이 보장되므로 규제준수 가능성은 매우 高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는 특허청의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 담당 공무원이 검토·승인하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추가적인 집행자원 없이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는 특허청의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 담당 공무원이 검토·승인하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시행규칙 제정안 작성('24.3.13, 특허청)
- 廳 內 의견수렴 실시('24.3.14 ~ 3.20)
- 시행규칙 제정안 확정('24.3.21)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규칙 제정 이후 주기적으로 現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기관(특허 문서전자화센터)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 검토 및 환류 시행

3. 종합결론

-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의 업무 추진 시 주요사항에 대한 규정을 특허청장이 관리하여 고품질의 산업재산정보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특허행정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제고와 산업재산정보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